

아리야리! 정선
the mecca of arirang, jeongseon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

군 보

<http://www.jeongseon.go.kr/>

제355호 2015. 5. 6. (수)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15-321호 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결정(변경)(안) 및
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공람·공고 1
- 정선군 공고 제2015-323호 고한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
열람공고 3
- 정선군 공고 제2015-342호 분묘개장공고(1차) 5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(전화:560-2224, FAX:560-2592)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15-321호

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결정(변경)(안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·공고

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결정(변경)(안)과 이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,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(주소, 성명, 전화번호 포함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4월 24일

정 선 군 수

- 가. 공람목적 : 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결정(변경)(안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
- 나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(2015. 4. 24. ~ 5. 8.)
- 다. 공람장소 :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읍·면사무소(정선읍, 고한읍, 사북읍, 신동읍, 남면, 여량면, 북평면, 임계면, 화암면)
- 라. 계획의 범위 : 정선 군관리계획 재정비(정선군 행정구역 전역)
- 마.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 결정(변경) 개요
 - 용도지역 결정(변경) : 도시지역(주거, 상업, 공업, 녹지지역) 및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
 -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지역 결정 :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
 -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 : 도로, 주차장, 광장, 녹지, 공원, 학교, 전기공급설비, 우수지 등
 -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고한·사북 지구단위계획, 구절리 지구단위계획, 화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, 사북직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
- 바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면 및 조서 : 게재 생략(공람장소 비치)
- 사.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: 게재 생략(공람장소 비치)
- 아.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결정(변경)(안) 공고 및 공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

고로 같음하며,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

자. 의견제출장소 및 방법 : 공람기간내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 서면 제출
차. 본 열람(안)은 최종 결정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
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
(033-560-213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정선군 공고 제2015-323호

고한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

고한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【보상계획의 열람 등】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4월 24일

정 선 군 수

1. 사업의 개요

사 업 명	사 업 량	사업기간	편입토지
고한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	사면정비 A=42,700m ²	2015. 5. ~ 2015. 12.	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 260-1번지외 13필지

2. 사업시행자 : 정선군수

3. 열람기간 및 장소

가. 기 간 : 2015. 4. 24. ~ 2015. 5. 14. (토일요일·공휴일 제외 14일간)

나. 열람장소 : 정선군청 안전건설과 (☎033-560-2496)

다. 이의신청 :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.

4. 보 상 대 상

가.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: “별첨”(정선군 안전건설과 및 고한읍사무소 비치)

5. 보상(예정)시기 : 2015년 5월 ~ (청구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)

6. 보상방법 및 절차

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→ 감정평가 및 보상금결정 → 손실보상 협의요청

⇒ ① 협의(계약체결시)→ 소유권이전 → 보상금지급

⇒ ② 협의 불성립시 → 수용재결 → 보상금 공탁
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안전건설과 재해예방팀(☎033-560-249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 건 서

사업시행자	정 선 군 수
사 업 명	고한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공사
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	
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	
기 타	
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. 2015. . . . 의견제출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전화번호 : 정선군수 귀하	
비 고	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선군 공고 제2015-342호

분묘개장공고(1차)

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고한읍 중2-8호선(고토일)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지구 내 설치된 분묘를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」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한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.

2015년 5월 1일

정 선 군 수

1. 분묘위치 :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51-2
2. 분묘개수 : 1기(연고자 불명)
3. 개장사유 : 고한읍 중2-8호선(고토일)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내 편입
4. 개장방법 : ①유연분묘 : 연고자 신고 및 협의개장 후 이장비 지급
②무연분묘 :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
5. 공고기간 : 최초공고일로부터 1개월간
6. 안치장소 :
 - 화장장소 :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500-34(정선군 하늘터)
 - 봉안장소 :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송동원길 203(정선 하늘공원)
 - ※ 안치장소는 납골당 수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7. 안치기간 : 안치 후 10년
8. 공 고 자 : 정선군수(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)
9. 신고시 구비서류 :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분묘자(고인)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족보, 가첩, 제적등본, 사실확인서 등)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10. 신고 및 열람장소 :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(☎033-560-2456)
11. 기 타 : 개장 중 발견하지 못한 분묘의 유골발생 시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.